

## 직무상비밀사실신고

사 건 2000고단 000호 위증 피고인 0 0 0

위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20〇〇. 〇. 〇〇. 〇〇:〇〇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으나 본인이 증언하여야 할 사항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에 속하는 내용인바 형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신고인(증인) ○ ○ ○ (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	せる。 は で も H <sup>2</sup> に 世 最 子 な を も に に は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 に	10166
제출법원	사건계속 법원	
신고권자	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	
제출부수	신고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147조	
사 유	1.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함. 2.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함 (형사소송법 147조)	